

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증 다음과같이
개정한다.

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②체육회장은 수탁운영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타인또는
법인에게 전대 및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.

제5조를 다음과같이 한다.

제5조(운영지원) ①도지사는 지방재정법령이 정하는 바에
따라 회관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출연하거나 비용의 일부
를 지원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 공유재산 및 기부채납
재산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기
부채납재산의 가액을 연간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로
하고 그 이후 부터는 유상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이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이조례 시행전에 회관운영에 관하여 처리
한사항은 이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